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1
----------	-----

제안연월일 : 2023. 12. 2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23년 12월 31일 시행)으로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이 통합되어 안전행정실이 신설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변경
 - 자치행정국을 삭제하고 안전행정실 추가
- 제3조 제2항 제6호 가목 변경
 - 재난안전실을 삭제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대구경북공항추진 본부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행정보건복지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 <u>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학교</u>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4. 5. (생략)</p> <p>6. 건설소방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u>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7.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u>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u>----- ----- ----- -----</p> <p>4. 5. (현행과 같음)</p> <p>6.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u>----- ----- ----- ----</p> <p>7.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 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동해안전락산업국(충무민원실을 포함한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학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문화환경위원회

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농수산위원회

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건설소방위원회

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되는 조직에 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상임위원장 유고시 권한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되는 조직에 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지방행정사무관 유경하(054-880-5201)



경 상 북 도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정책기획관-15809(2023.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이 통합되어 안전행정실이 신설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주무관 권오순 예산총괄팀장 권미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3. 12. 14.
윤희관

합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5819 (2023. 12. 14.) 접수 정책기획관-15958 (2023. 12. 14.)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271@korea.kr / 대국민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